

## 자동차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b>과세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제13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5조~제69조</li> <li>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제141조</li> </ul>
<b>납세의무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 관할 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li> </ul>
<b>가산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제31조</li> <li>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li> <li>중가산금 : 본세(각 세목별 세액)가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li> </ul>
<b>일시납부할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월 : 1월, 3월, 6월, 9월</li> <li>- 1월 : 11개월분(2월~12월)의 7% 공제</li> <li>- 3월 : 9개월분(4월~12월)의 7% 공제</li> <li>- 6월 : 6개월분(7월~12월)의 7% 공제</li> <li>- 9월 : 3개월분(10월~12월)의 7% 공제</li> </ul>

<b>세율</b>	승용자동차 : 배기량×CC당 세액×차령적용률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령적용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경과시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경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제2항</li> <li>* 기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자동차 : 정액세액(지방세법 제127조)</li> <li>* '지방세법' 검색 : 법제처(<a href="https://www.moleg.go.kr">https://www.moleg.go.kr</a>)</li> </ul>				

## 구제방법 안내

<b>이의신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b>90일 이내</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세는 <b>구청장</b>, 특별시세는 <b>시장</b>에게 신청</li> <li>* 지방세기본법 제7장</li> </ul>
<b>심판청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을 거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b>90일 이내</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을 안 거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b>90일 이내</b></li> </ul>
*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가능		
<b>심사청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b>90일 이내</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세, 특별시세 모두 <b>감사원장</b>에게 신청</li> </ul>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가능		
<b>신청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정기관 신청·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의 경우 <b>서울시 홈페이지</b> 또는 <b>이택스(ETAX)</b> 사이트에서 신청가능</li> </ul>

## 납부방법 안내

<b>은행방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li> <li>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li> <li>-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li> <li>- 타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li> <li>* <b>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b></li> </ul>
<b>스마트폰(STAX)</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앱·PLAY스토어에서 &lt;서울시 세금납부&gt; 앱 설치</li> <li>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li> <li>* <b>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b></li> </ul>
<b>이택스(ETAX)</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검색창에서 &lt;이택스&gt; 검색 ·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li> <li>* <b>비회원 :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 입력 조회</b></li> <li>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li> <li>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토스페이, 앱카드(8개사)</li> </ul>
<b>ARS</b> (23시 30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li> <li><b>ARS 전화 납부 예시</b></li> <li>☎ 1599-3900 전화걸기 ☎ 지방세 등 조회납부 ①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①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누름 ☎ 신용카드 ①번, 신한은행 계좌 납부 ②번 중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결제승인 ☎ 납부완료</li> <li>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납부</li> </ul>

## 환급 및 전자납부 등 혜택 안내

<b>지방세 환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STAX)앱 : 조회·신청</li> <li>인터넷 이택스(ETAX), 정부24(민원24) : 조회·신청</li> </ul>
<b>정기세목 전자고지 자동납부</b>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함</li> <li>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800원</li> <li>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800원</li> <li>전자고지 + 자동납부 시 : 건당 1,600원</li> <li>* <b>납기내 미납시 차감세액이 추징 됨</b></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p><b>전자고지 신청방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li> <li>2. 카메라에 QR코드가 들어오도록 맞추어 주세요.</li> <li>3. 접속 링크 알림이 발생하면 해당 앱 설치 또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li> </ol> <p>* QR코드 인식이 안될 경우 카메라 설정에서 QR코드 스캔 -&gt; "켜기"한 후 사용하세요.</p> </div> </div>

## 홍보

### !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변경안내

2023년

**(7%)**

적용

2024년

**(5%)**

적용

2025년

**(3%)**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납공제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존 10%에서 3%로 조정됩니다.